

#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140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0. 3.2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재근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 '99. 8.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청결명령제 시행, 폐기물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5톤미만 건설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분류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건설폐기물의 뼈위를 종전 1톤이상에서 5톤이상으로 정하여 5톤미만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배출시 특수규격봉투 사용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제6조, 제13조)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청결명령 불이행시 구청장이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의 1)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합의사항 : 필요없음.

## 2. 검토결과

■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중 토지, 건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국민의 책무등 새로 도입된 청결제도 이행규정 및 5톤미만 소량배출 건설 폐기물을 처리제도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하는등 현실과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 ■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제4호에 의거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개정(안 제2조제4호)
-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중 광작물의 재거, 건축, 토목공사등의 작업으로 종전의 “1톤이상”에서 “5톤이상”으로 개정(안 제2조제6호)
- 5톤미만 건설폐기물배출시 특수규격봉투 사용토록 개정(안 제6조, 안 제13조)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구청장이 청소시행후 대상자에게 비용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4조)
- 폐기물 무단투기 위반행위자를 신고한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의1)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관리규정의 근거법을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 제15조제2항“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 특수규격봉투의 가정용, 사업장용 구분을 없애고 소량의 건설폐기물전용으로 하여 가격을 2,180원으로 개정(안 별표 3)

**□ 검토의견**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4조의1(포상금 지급규정)은 조례의 체계상 제7장 보칙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5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 < 관 계 법령 >

## [ 폐기물관리법 ]

**第6條 (國民의 責務)** ① 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は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清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削除 <99·2·8>

**第7條 (廢棄物의 投棄禁止等)** ① 누구든지 市長·郡守·區廳長이나 公園·道路등施設의 管理者が 廢棄物의 收集을 위하여 마련한 場所 또는 設備외의 곳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埋立施設외의 곳에 廉棄物을 埋立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が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の 處理協助等)** ① 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廉棄物을 스스로 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 生活廢棄物排出者は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削除** <99·2·8>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제2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폐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99.8.6.)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96.1.19)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개정 99.8.9 : 산업성폐기물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8.9)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관련)

### 1. 공통사항

-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을 그려하지 아니하다.
-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너류중 저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가.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모기·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일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페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거나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1.1)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퍼하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집객업종(영업에 필요한 난포함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저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 (마) 관광홍보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 가열에 의한 감량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나) 밸효 또는 밸효진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전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 가.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 물질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보관의 경우

-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황제·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처리의 경우

- (1) 공통기준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빌진·연료화처리